

1. 개정이유

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및 융복합 서비스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「자율기구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, 폐지하는 "미디어혁신지원과"와 신설하는 "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"의 전결사항을 반영하고자 「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」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"기획조정관" 및 "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" 위임전결 사항을 일부 변경
(별표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, 방송통신위원회와 그
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 등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별지

●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80호

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다.

2024년 12월 30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안

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2] 전결사항[제5조 관련]

< 변경 후 >

구분	연번	단위 사무	상세 단위사무	사무내용	직원	팀장	과장	국장	사무처장	위원장	
<삭제>											
신기술 이용자 보호 혁신과	1	방송통신 위원회 소관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자보 호	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자 보호 정책	정책수립						○	
				정책 추진 및 관리				○			
				관계기관 협의				○			
				자료 조사, 수집, 분석	○						
			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자 법령 제개정	법령 제개정 등 중요사항						○	
				관계기관 협의				○			
				자료 조사, 수집, 분석	○						

< 변경 전 >

구분	연번	단위 사무	상세 단위사무	사무내용	직원	팀장	과장	국장	사무처장	위원장

< 변경 후 >

구분	연번	단위 사무	상세 단위사무	사무내용	직원	팀장	과장	국장	사무처장	위원장
			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자 가이드라인 마련	가이드라인 제개정 등 중요사항				○		
				관계기관 협의			○			
				자료 조사, 수집, 분석	○					
			신기술 이용자 보호 대내외 정책추진 효율성 강화	대내외 협력 관련 중요사항				○		
				대내외 협력 관련 일반사항			○			